#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8. 27.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8월 12일

나. 발 의 자: 박현우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8. 2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현우 의원)

### 가. 제안이유

- 남북 이산가족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행정의 실효적 행사를 위한 통일과 통합의 실질적 주체로서 이들의 문화적 자산과 역사적 경험을 보존하여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통일 한국의 정체성 확립,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임.
- 이북도민 소멸과 북한이탈주민 유입에 따른 통일 환경에 대처하고자 남북 이 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조사, 협력 등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권을 보호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에 기 반한 이들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이 산가족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O 이산가족의 날(안 제5조)
- 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안 제6조)
- O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안건은 영등포구 내에 주소를 둔 남북 이산가족 및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정의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르며, 이에 더하여 ▲이북도민 ▲북한이탈주민 ▲월남 실향민 이산가족 ▲납북자 ▲미귀한 국군포로 ▲대한민국에서 석방한 송환불원포로▲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 ▲월북자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정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확장함.
- 안 제4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에서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 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5조(이산가족의 날)에서는 「이산가족법」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에 따라 "이산가족의 날"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

#### ○ 검토 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 주의적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인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가 '20년 12월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

-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이산가족의 날 행사 및 홍보 ▲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우선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인 「이산가족법」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매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단기·중기적 관점에서 연계되어 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이산가족의 날 행사 및 홍보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산가족 지원 정책의 수립과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됨. 아울리, 「이산가족법」제12조의2제2항(이산가족의 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본 조례의 해당 조항은 적절하다고 여겨짐.
- 다만, 당사자의 "신청주의"에 따라 이러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에 본 조례 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내의 "남북 이산가족" 범위로 주민을 파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378 번 호

발의연월일: 2024. 8.

발 의 자: 박현우 이순우 기지연

최봉희、임헌호、유승용

이규선 의원(7인)

## 1. 제안이유

- 가. 남북 이산가족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행정의 실효적 행사를 위한 통일과 통합의 실질적 주체로서 이들의 문화적 자산과 역사적 경험을 보존하여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통일 한국의 정체성 확립,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임.
- 나. 이북도민 소멸과 북한이탈주민 유입에 따른 통일 환경에 대처하고자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조사, 협력 등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권을 보호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이들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라. 이산가족의 날(안 제5조)
- 마. 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안 제6조)
-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4. 8. 14. ~ 8. 19.):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이들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산의 실질적 주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 이산가족"이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으로 이북도 민, 북한이탈주민, 월남 실향민 이산가족, 납북자, 미귀환 국군포로, 대한민 국에서 석방한 송환불원포로,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 월북자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구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2.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그 진행경과를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이산가족의 날)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
  - 2.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 3.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망향・위로 사업
  - 4. 남북 이산가족 역사·문화 보존 및 향토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
  - 5.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
  - 6.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사업
  - 7.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 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 8. 남북 이산가족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사업

- 9.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